

# 포스트 미투 운동과 ‘시민-독자’의 자리

: 이후의 삶, 너머의 문학

소영현\*

## 목차

1. 들어가며
2. 포스트 미투 운동, 다시 ‘○○\_내로
3. ‘피해자-되기’와 사건 다시 말하기, 다시 쓰기
4. ‘연대자-되기’와 아카이빙 프로젝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18년 시작된 미투 운동 이후 한국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포스트 미투 운동 시대를 전망해보고자 했다. 성폭력 관련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자체도 쉽지 않지만, 법적 판결만으로 미투 운동의 성취를 말해도 좋은지,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나 미투 운동의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지 묻고자 했다. 성의 위계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제기인 미투 운동이 법적 공방으로 납작해지는 동안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자 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미투 운동이 개별 공동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대처법이 요청되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가해-피해의 권력 차이로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점차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대한 기록이 누락되고 왜곡되는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사건의 다시 쓰기와 사건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의

\*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전문연구원

절실한 필요성을 지적했다.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연대의 방식으로서의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미투 운동 이후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보았다.

국문핵심어 :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미투 운동, 성폭력, 피해자-되기, 연대자-되기, 아카이빙

## 1. 들어가며<sup>1)</sup>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밝혀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배용제 고양예고 실기 강사에게 2018년 6월 15일 최종 징역 8년형이 확정 선고되었다. 2019년 2월 1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5일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추행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sup>2)</sup>

---

1) 문학의 이름으로 행해진 참혹한 성폭력과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들, 그로 인해 망가진 영혼들과 그들의 고통을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동시에 특정 가해자를 넘어 우리의 삶 곳곳에 포진해 있는 ‘가해자들’과 그런 가해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사회 전체에 대한 고발에까지 가닿은 대만 작가 린이한(林奕華)의 소설 『광쓰치의 첫사랑의 낙원』(허유영 역, 비채, 2018.)이 보여주었듯 적폐의 한가운데 채신의 가능성이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2016년 이후로 문단 내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학 연구자들과 비평가들이 지속적 논의를 이어왔다. 모색의 논의들이 전하는 채신의 가능성은 앞선 글이 던진 질문이 뒤이은 글에 의해 깊어지고 확장되며 다른 질문으로 연장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소중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위로, 공감, 성찰, 연대, 확산이야말로 미투 정신 자체가 아닌가. 절망적 고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독한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의 기록을 등불 삼아 다른 질문들이 뒤잇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글이 미약하나마 그 기록 가운데 하나임을 밝혀둔다. 이 글이 자기기록지의 성격을 띠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은 시인이 청구한 이 소송은 진술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 즉 성추행이나 음란행위의 여부가 아니라 최영미 시인의 진술의 허위성과 그것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어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다.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으로 실제 사건 자체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판결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최영미 시인은 문단 내 성폭력을 폭로하고 남성 중심적인 문단 권력 문제를 제기해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가 운영하는 2018년 성평등상을 수상했다. 서지현 검사 관련 소송의 결과와 함께 미투 운동의 성공을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들은 미투 운동을 통한 폭로와 고발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미투 운동의 사회적 정당성이 마련된 사례라 해야 할 것이다. 여성 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회복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해도, 향후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지목된 문화계의 명망 높은 예술가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투 운동 이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탄임에 분명하다.

2018년 성희롱 관련 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복수의 학생들에 대한 14건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를 사유로 해임된 A씨의 원심 판결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성희롱 발생 사실 자체를 부정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판결은 우선 피

2) 2018년 2월 발표한 시 '괴물'(『황해문화』)에서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바 있다. 고은 시인이 1994년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을 했었다는 최영미 시인의 진술을 두고 재판부는 당시 출석한 증인의 진술, 제출된 증거 자료(최영미 시인이 쓴 일기) 등으로 미뤄볼 때, “최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고, “저명한 문인으로 문화예술계에 영향력 있는 인물인 원고에 대한 의혹제기는 국민의 관심사로 공공 이해에 관한 사안”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을 따지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미 시인 “정의 살아있음에 감사”』, 『한겨레』, 2019.2.15.;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최영미 진술 구체적·일관돼”』, 『서울신문』 2019.2.15.; 『최영미 시인 “정의 살아있어…가해자가 피해자를 뺄뻐 스토크 고소”』, 『국민일보』, 2019.2.15.; <“최영미 시인, 고은에 배상 책임 없다”>, <<MBC: 이슈완전정복>> 2019.2.15.

해자가 피해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중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따라서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성희롱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놓여 있는 권력 관계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판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3)</sup> 법조계 내에서도 이 판결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 2016년 이후로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이루어진 ○○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운동을 통해 거론된 사건들이 정당한 법적 판결에 이르게 될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듯, 법은 정의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선이다. 2018년 1월 검찰 내부 통신망 게시판에 올린 서지현 검사의 글 『나는 소망합니다』로 시작된 미투 운동 이후로, 거슬러 올라 2016년 10월 17일 ‘#오타쿠\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으로 전망위적으로 폭발한 ○○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폭로된 사건들의 법정 공방이 상식적 정의와는 다르게

3)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률신문』, 2018.4.20,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1) 성희롱 소송의 심리에 있어 유념할 사항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판단기준: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성희롱 사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2) 성희롱의 판단기준: 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상식'은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법적 판결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폭력의 재현과 미투 운동을 소개하는 언론의 태도 속에서 재구축되는 것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시선과 남성 중심적 시선으로 미투 운동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의 미디어적 재현은 당대의 규범적 질서에 대한 관념과 관행 즉 명예나 인권의 주체가 젠더적으로 한정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현실 사회의 시대감각과 연관되어 있다.<sup>4)</sup> 시선의 교체를 통해서만 곧바로 해소되거나 재편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미디어의 성격과 미투 운동의 전개 양상의 관련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해두고자 한다.

서지현 검사의 고발이 미투 운동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6년 하반기 이후의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이후 본격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선구적 성격을 갖는다. 언론은 이 운동 과정에서 폭로된 사건들을 특정한 개인의 일탈이나 윤리적 타락의 문제로 다루었다. 성폭력이 사회구조적 위계의 결과라는 사실은 부차적으로만 의미화되었다. 애초에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시태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사건에 대한 대응이 소셜 미디어 쪽에서 본격화된 것도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성 언론의 편향된 태도에 대한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

4) 미디어 재현이 만들어낸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의 사회적 기회나 활동을 제한하고 여성의 수동성과 의존성이라는 관념을 재생산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성에 대한 분할적 통치를 통해 성별 사회적 위계를 강화하게 된다.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한국방송학보』 제23권 5호, 한국방송학회, 2009, 458-498쪽; 권인숙·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아시아 여성연구』 제5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85-118쪽; 김은경·이나영, 『성폭력, 누구에 대한 어떤 공포인가: 언론의 성폭력 재현과 젠더질서의 재생산』,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5-38쪽.

실제로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얻게 된 운동적 의미는 적지 않다. 해시태그는 특정 주제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맥락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장점을 갖는다. 나아가 사적 증언을 보관하고 기록하는 아카이브로서, 여성혐오와 젠더 폭력의 사례들을 포획하는 거대한 사회 기록장으로서의 기능을 한다.<sup>5)</sup> 사회 내적으로 특히 조직 내부에서 권력을 가진 유명인사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나 폭로가 쉽지 않으며 오히려 내부고발자로서 고통을 떠안게 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개인들의 자기 서사적 파편들이 공적 담화로 옮겨갈 수 있도록 흐름을 견인한 소셜미디어와 해시태그의 역할로, 미투 운동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마련할 수 있었다. 동시에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고발이나 폭로 이후로 좀더 빠르게 개인별 사건 단위로 분절되고 법적 공방으로 협소화되었는데, 운동 성격의 이러한 변화는 소셜미디어 기반의 운동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소셜미디어 안과 밖의 경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셜미디어의 여론이 현실의 '상식'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 말하자면 소셜미디어 기반의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성별과 세대 제한적인 운동이 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문화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좁혀서 문학출판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로 문화계, 문학계 일원들의 해결을 위한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지지와 연대 활동이 지속되었다. 동시에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들이 각종 소송에 휘말려야 했고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등 커다란 고통을 겪는 시간이 지속되어야 했다. 법정 공방이 반복되면서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운동의 국면과 맥락의 의미가 소거된 채 점차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제로 납작해졌다. 시민

5) 김효인,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OO\_내\_성폭력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2권 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15-19쪽.

으로서의 입장 표명에 주저하지 않는 문인들이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나 최영미 시인의 미투 운동에 대한 문단의 반응이 거의 침묵에 가까웠던 것은 2018년의 미투 운동이 있기 이전의 경험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연대를 위한 움직임이 직면하게 되었던 문제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대한 각성이자 그로부터 기인한 피로가 낳은 결과를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둘러싼 원인 분석과 함께 운동의 국면이 납작해진 과정이 삭제하거나 누락한 지점들에 대한 복원 가능성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포스트 미투 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포스트 미투 운동, 다시 '○○\_내'로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로 많은 문인들이 문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발 빠르게 지지와 해결을 위한 연대 모임을 시작했다.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 의해 입시를 준비하거나 등단을 준비하는 여성, 그리고 출판사의 여성 편집인에 대한 남성 문인들의 가해가 폭로되었다.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전형적인 공동체 내 권력형 젠더 폭력을 고발하고 있었다. 그런데 '○○\_내' 성폭력 문제에 대해 권력의 위계 구도 속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인 이들이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동안, 점차 폭로된 사건들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탈적 개인의 문제로 협소화되었다.

다른 한편,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점차 '○○\_내'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 없이 성폭력 일반의 문제가 되었다. 물론 공동체 내 젠더폭력은 '○○\_내'의 차이를 넘어선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_내'의 문제로 축소되어서도 안 된다. 여타의 문화계와 마찬가지로 문학계도 한국사회에 널리 팽배해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조

직 문화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이 문제를 문학의 이름이 아니라 시민의 이름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계기였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한국에서 축적해 온 반성폭력 운동의 축적된 역사 위에서 시작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sup>6)</sup>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난 후 2017년 즈음 여성 문인들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과 접촉했던 여성학자 정희진은 당시의 운동의 성격을 두고 운동과 연대의 주체들이 “문단의 특수성(자율적 해결)’에 집착하고 ‘일부 문인의 문제’이자 ‘성폭력(범죄)이 아닌 추문’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작가와 텍스트의 분리’라는 전제에 머물러 있었다고 회고한다.<sup>7)</sup> 활동 당사자들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해야 하지만, 당시의 문단 전반에서 이러한 인식과 태도가 얼마간 공유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자체는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미숙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단의 특수성을 강조하기보다 성폭력 일반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더 많이 의식했었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생각해보자면 정희진의 지적은 ‘○○\_내’의 성폭력 사건을 공동체내의 성의 위계에서 발생한 젠더폭력의 차원으로 즉 좁든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분명 정당하다.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말할 것도 없이 미투 운동은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대한 고발과 폭로로서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성폭력을 “조직상의 위계와 젠더권력에 의해 벌어지는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러한 요청은 2016년 고양예고 졸업생 연대 <탈선>이 결성되던 때부터 강조되었던 바이기도 하다.<sup>8)</sup> 성폭력이 한 개인의 인성이나 성적 일탈로 축소될 수 없는 명백한

6)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 정희진 엮음,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울, 2003 참조.

7) 정희진,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105쪽.

8) 양경언, 『우리는 함께 시작했다-고양예고 졸업생 연대 ‘탈선’의 성명발표에 부쳐』,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 요청은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이후로, 아니 더 거슬러 올라 한국사회에서 반성폭력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난 후 지난 20여 년 동안 내내 요청되었던 바이다. 성폭력을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시야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요청은 여전한 타당성을 갖는다. 검찰 내의 조직문화를 바꾸는 것과 문화계의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근본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져 한다.

그런데 2016년 이후 문단 내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의 해결만으로 충분한가를 되문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_내'로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성은 최근 재개된 한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 연대모임'에 참석한 이후로 좀더 뚜렷해졌다. 지난 2019년 4월 29일 #문단\_내\_성폭력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2016년 이후로 여전히 진행 중인 공동 고소와 소송 판결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문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들과 '문학의 이름으로' 피해자가 되어 '문학을 떠나는' 피해 생존자가 생겨나는 이 이상한 메커니즘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새삼 환기되었다.<sup>9)</sup>

『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11.17.

9) 적지 않은 인원의 참석자들과 함께 2019년 4월 29일 #문단\_내\_성폭력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가 주최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문단\_내\_성폭력 시즌2,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 비등단 선언 등 새로운 움직임』, 『경향신문』, 2019.5.13.) 아가미 공동 대표는 <탈선>과 <우롱센텐스>에 이어,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로 공동 고소를 진행하면서 연대모임이 꾸려졌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대표의 소회는 연대 모임이 우선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했다. 사건의 해결만큼이나 피해자의 감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연대자 그리고 참석자의 말-하기/말-듣기로 이루어진 좌담회에서 오고간 많은 말-경험들 가운데 피해자 뿐 아니라 연대자의 고통에 대한 고백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트라우마적 기억으로 인한 고통, 끝없이 이어지는 소송들 자체가 야기하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에 깊이 공감했지만, 공감한다는 말을 쉽게 해도 좋은지 한없이 조심스러웠다. 소송이 마무리된 고양예고 강사 사건의 피해자가 말한 고통을 곱씹는 중에 포스트 미투 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된 이후에 오히려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아가미 공동 대표의 고백이 나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란 무엇이며 문단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해결은 과연 같은 것일 수 있는가. 점차 질문과 해법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뚜렷해진다. 각 분야와 영역의 서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면서 조직 문화를 ‘바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따로 또 함께 모여 서로 다른 그 ‘바뀌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봐야 할 시점에 이른 게 아닐까. 인식적 전환을 위해 젠더폭력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좀더 세분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에서 ‘○○\_내’라는 지점 즉 조직(혹은 공동체)의 특수성에 대해 좀더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sup>10)</sup>

\*

피해 생존자가 된다는 것, 피해자를 위한 연대모임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폭력 가해자들을 모두 처벌받게 하고, 성폭력에 대한 법적 규정을 확장하는 것에서 끝나도 되는 것일까. ‘○○\_내’에서 ‘○○’을 추구하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이들이 ‘○○\_내’로 돌아오지 못할 때 피해자 개인의 생존 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_내’의 젠더적 감수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여성혐오적 문화가 비판되고 젠더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나 미투 운동은 피해자가 ‘○○\_내’로 귀환하는 자

---

에게는 한 명의 가해자의 처벌로 미투 국면을 과연 전진시킬 수 있는가라는 회의와 질타의 말로. 또한 동시에 다시 ‘○○\_내’로 어떻게 아니 과연 돌아갈 수 있을 까라는, 회한을 담은 방백으로 들렸다. 그 말은, 가시화되지 않은 피해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도 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자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환멸과 함께 ‘○○\_내’를 떠났으며 떠나고 있을 것일까라는 우려와 탄식으로 내게 되돌려졌기 때문이다.

- 10) 가령, 문학장의 경우, 출판사와 문학지 등을 중심으로 느슨한 의미의 조직 혹은 공동체를 상정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문학장에서 실질적인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위계적 권력 구조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 성범죄를 가능하게 한 위계적 ‘권위’를 두고 대표적인 문학 출판사에서 작품집을 출간한 이력(‘○○에서 시집을 낸 시인’)이나 소위 유명한 시인과의 친분 과시 등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문학장의 특수한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사건 2016형 제48935 변호인 불기소 의견서 참조.

리에서 운동의 성공을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성폭력 가해자가 이후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행보는 연령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가해자의 대처의 패턴이 ‘동일하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한없이 좁다는 의미에서 비슷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걸고 고발과 폭로를 하며 발생할 수도 있는 미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지만, 그 결과로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단 내 성폭력의 문제를 두고 보자면,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견디느라, 법적 공방 속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삶은 쉽게 문학과 분리된다. 이미 ○○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에서부터 확인된 바이다.

폐쇄적인 예술고등학교 환경에서 B시인은 곧 문학이었으므로 제 친구는 그를 떠나기 위해 문학을 등질 수밖에 없었습니다.<sup>11)</sup>

나는 문학을 등졌다. ‘문단’에 대한 염증이 컸다. 피해 사실을 밝혔을 때 놀라고 같이 분노한 삶도 있었지만 “원래 그렇다더라”는 답도 돌아왔다. 이미 문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풍토처럼 자리잡고 있는 곳에선 목소리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 속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은 관두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했다.<sup>12)</sup>

‘문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성추행과 성폭력이 법의 문장으로 납작해지면서 애초에 사건의 발단이자 계기가 된 ‘문학의 이름으로’라는 자리가 지워지고 있었다. ‘문학의 이름으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의와 복원 없이 문단 내 문화를 개선하거나 문학계 성폭력 피해를 줄이는 일은 결국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피해 생존자가 인

11) 정민재·정유진·문태영·박혜원, 『달선』 자율 발언, 『참고문헌없음』, 2017, 42쪽.

12) 『꿈』 불모로 미성년 성추행...배용제 시인 판결이 남긴 것, 『한겨레』, 2017.9.20.

권을 존중받는 존재라고 말하기도, 나아가 ‘○○\_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도, 좀더 정확하게 말해, 미투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다고도 말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소속된 공간과 그것을 지탱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전복으로서의 문제제기에 이르지 못할 때 미투 운동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리에 남게 되고 심지어 피해를 야기한 공동체의 위계적 권력구조는 역설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공동체로의 귀환 없이 피해 생존자라는 말이 과연 가능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의 공동체로의 귀환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만든 제도에 대한 인식적 재편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피해자의 공동체로의 귀환을 말하지 않은 채로 실제로는 어떤 변화도 이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조계, 문화계, 체육계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 공동체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이 촉구되는 이 시점이야말로 각기 다른 ‘○○\_내’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모색이 시작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연대의 지도가 그려질 수 있는 게 아닐까. 피해자들이 휘말려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공동의 논의를 하는 동시에 ‘○○\_내’와 ‘○○’ 자체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회 전반에 구조화된 여성혐오로까지 문제들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포스트 미투 운동 시대에 대한 상상은 피해자의 공동체로의 귀환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 3. ‘피해자-되기’와 사건 다시-말하기, 다시-쓰기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의 글 『나는 소망합니다』에는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영향이 언급되는 대목이 있다. 이 대목이 흥미롭다면, 그만큼이나 더 『나는 소망합니다』가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심을 끈다. 서지현 검사의 글에서 폭로되는 것은 단지 2010년 10월에 당한 강제추행이 아니다. 서지현 검사는 사과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부당한 인사

발령 등으로 불이익을 준 권력의 비열한 면모를 폭로했고,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검찰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믿음이 깨진 것에 대한 자각을 고백했다. 의식하지 못한 채로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조직 문화를 내면화해왔던 자신을 반성했으며, 미래의 범죄에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의지를 담아서 검찰 내 조직문화의 변화를 촉구했다. 성추행에 대한 고발과 조직 내 젠더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고발 형식의 짧은 글이면 충분했다. 그럼에도 왜 소설 형식의 글이 보충되어야 했을까. 소설 형식을 통해 전하고자 한 바는 무엇일까.

소설 형식의 글에서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살기 위해 잊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 날 그 곳에서의 그놈의 행동들, 그놈의 숨결, 어찌면 그 술 냄새까지 또렷이 새겨질 뿐”이었으며, 불면과 울렁증, 발작성 현기증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 그날 그 시각에 그곳에 가게 된 이유, 그의 옆자리에 앉게 된 상황, 그것이 우연적인 사건의 연쇄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불운이 아니었음을 이야기의 형식으로 말한다. 사건으로 단면화하지 않고 삶이라는 지평 속에서 스스로 납득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자 시도한다.

수많은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에 대한 생각 끝에서야 부모를 잃고 상심했던 자신이 동기의 부친상에 마음이 쓰여 장례식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거의 언제나 기수와 상관없이 높은 양반 옆 중앙 좌석에 여성을 앉혀왔으며, 장관보다 먼저 일어서 나오는 것이 쉽게 양해되지 않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조직문화가 강고했다는 것, 검찰에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자는 남자의 50%로 생각한다는 상사와 수시로 성희롱을 해대는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들을 피할 수 없었으며, 여성혐오 문화가 상시적이고 일상적이었던 것, 착하고 예쁜 딸로 살도록 가르치고 부당한 요구에도 그저 참는 모습을 보여준 가부장제적 부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소설 형식의 글을 통해 강제추행을 둘러싼 ‘맥락들’이 복원된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야 속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맥락들이 함께 언급되지 않고서는, “다 내 탓”이라는 자책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전한다. 서지현 검사는 이 과정을 거치고서야 ‘피해자-되기’가 가능했으며 자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 ‘다시 말하기/다시-쓰기’를 통해 자책이 스스로에 대한 지지가 되고 죄책감이 사회 변화를 이끌 용기가 되는 것이다.<sup>13)</sup> ‘피해자-되기’는 가해자의 폭력적 행위의 전후 상황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까지를 불러오는 성찰과 기록 과정 자체인 것이다.

서지현 검사의 소설 형식의 글은 피해와 피해자 사이의 간극을 환기한다. 성폭력이 발생한 시점과 고발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는 간극이 좁지 않다.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젠더 인식에 입각한 이해는 사회적으로 매우 미흡한 편이다. 미투 운동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폭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3.

다른 강사들은 당신을 믿지 말라고 했다. 동시에, 당신은 당신 외의 어떤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다. (...)

5.

성폭행을 당했다.

6.

이전에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았다. 나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내가 입을 열면, 공론화를 시작하면, 친구들이 모두 대학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여전히 친구들은 당신을 따랐다. 그쯤 되니 나의 잘못과 당신의 잘못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아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

13) 김보화, 『페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시민과세계』 제32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187쪽.

다.<sup>14)</sup>

당신이 행한 일이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대학교 합격 발표가 났을 즈음이었다. (...)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어 문예창작과에 입학했으나 모든 것에 무기력했다. 마음이 피곤하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이러다가는 내 이상이 망가질까봐 해결을 하려 들기도 했다. 하지만 법은 내게 너무 막연했다. 법적 대응을 할 힘도, 지식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당한 것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증명하기 어려웠다. 피해를 당한 후 아무 말도 못 했던 나를 떠올리며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 검열을 반복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시과의 기억을, 기억에서 파생된 수많은 생각들을 삭제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일 부분은 파괴되었다.<sup>15)</sup>

앞서 서지현 검사의 고발문이 보여주었듯, 피해자는 피해와 함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자기반성, 자체검열, 자아성찰을 통해 즉 '피해자-되기'라는 수행적 행위를 통해서나 만들어진다. 피해자는 언제나 사실상 피해 생존자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고발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말이 '들리게' 하는 일로, 혹은 피해자의 말을 '듣는' 일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건일지의 반복적인 다시 쓰기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물론 피해에 대한 '말하기'를 두고 여성학자 권김현영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지적했던 바, 피해 경험은 말해지되 '집단적인 피해'로서 말해져야 한다.<sup>16)</sup> 일부의 피해 경험이 과잉 대표되는 방식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 중심으로'라는 모토도 피해자를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야 한다

14) 고발자a, 『당신을 증오하는 열 가지 방법』, 『참고문헌없음』, 2017, 20-21쪽.

15) 고발자d, 『이 글은 필터링된 글입니다』, 『참고문헌없음』, 2017, 32쪽.

16) 권김현영, 『미투,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환』, 『문학동네』 2018년 여름호, 305쪽.

는 뜻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에 대한 논의를 피해자와 가해자만으로 한정하는 ‘협의를 당사자성’은 극복되어야 한다. 가해자 중심의 사회에서 ‘피해자의 느낌’은 중요한 참조사항이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sup>17)</sup> 피해자화가 생존의 불가피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다운’ 피해자성에 갇힌다면 역설적으로 현존하는 성별 권력 관계를 존속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sup>18)</sup>

피해, 피해자, 피해자화의 거리와 차이를 세심하게 구별한다고 해도, 성폭력의 피해자 모두가 ‘피해자-되기’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피해자-되기’는, 피해자란 누구이고, 성폭력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규정하는 온몸으로 싸워야 하는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학자 정희진의 말처럼 ‘피해자-되기’란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re-member)”하는 일, 말 그대로 “사지(member)를 재조합하는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sup>19)</sup>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건화되지 않고 피해자로 가시화되지 않은 더 많은 피해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피해자-되기’라는 수행적 행위가 대부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나도 당했다’는 의미의 미투(#MeToo)가 누군가의 피해를 막겠다는 미투-위드유(#MeToo\_#WithYou)일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피해자-되기’가 피해 당사자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다. 성폭력 문제에 있어 가장 참여한 쟁점은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앞선 ‘법적인 사건의 성립 여부’이기 때문이다. #문단 내 성폭력 고발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반복되었던 바, 사과하거나 ‘지속하고 절필하겠다’는 요

17) 권김현영, 『성폭력 2차 가해와 피해자 중심주의의 문제』,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50쪽.

18) 배상미, 『성폭력 피해자의 섹슈얼리티』, 『여/성이론』 제36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7, 15쪽.

19) 정희진, 『피해자 정체성의 정치와 페미니즘』, 권김현영 엮음,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209-211쪽.



지의 반성문을 쓰는 동시에, 가해 혐의자는 고발자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발설하고, 고발자의 목소리를 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시작한다.<sup>20)</sup>

분야를 막론하고 동일한 행보로,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위증, 손배소)를 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상대로 고소(명예훼손, 위증, 손배소 등)를 한다.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덮거나 축소하려고 시도한다.<sup>21)</sup> 실제로 여성가족부 관할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지원센터'에 따르면 미투 운동 이후 역고소 피해자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증가했다.<sup>22)</sup> 피해자와 연대자에 대한 가해자의 고소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남성 문인 연대자인 송승언에 의하면 자신에 대한 고소와 다른 피해 호소인에 대한 고소 사이에는 내용적 차이가 존재했다. 송승언은 가해자를 향한 수많은 자신의 비판 가운데 젠더폭력이 아니라 문학적 평가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꼬집었다.<sup>23)</sup> 문학의 자리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다룰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명예나 인권은 남성의 것이라는 젠더

20) 탈선, 『문학의 이름으로』, 『참고문헌없음』, 2017, 12쪽.

21) 김보화, 『강간공화국을 뒷받침해 온 법, '무고죄'』, 『일다』, 2018.4.16.

22) 『김기덕 감독, 2차 가해 멈추고 역고소 취하라』, 『뉴스스』, 2019.4.18.

23) “한 고소인은 내가 출판사를 향해 던졌던, 문단 권력의 중심인 출판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경계 의식에 대해 성토했던 글을 읽고서 나를 고소했다. 출판사를 끼고 도는 항간의 의혹에 대해 언급한 부분 중 한 대목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며 이로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주장이었다. 내가 글에서 그 의혹들이 단정된 사실은 아님을 밝혔으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고, 문제시된 대목은 출판사를 향한 여러 의혹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의혹을 지적하는 일이 글의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 글을 읽은 이들 대부분은 특정 인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며, 나 또한 그에 대해 생각했다기보다 그런 의혹이 세간에 돌게 만든 출판사 권력 구조의 문제를 따지기 위해 작성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술한 목적과 맥락을 지우고 그가 나를 고소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신을 겨냥(고 있다고 그가 생각하)는 그 대목이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으며 그로 인해 시를 쓰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송승언, 『송사 이후』, <<형평문학포럼: 문학 젠더를 말하다>>, 2018.4.27.

인식이 가해 혐의자의 명예훼손을 문제 삼고 위증에 대한 의혹제기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성추행과 성폭력 관련 소송은 가해-피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적인 사건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무고나 명예훼손 판결이 난다. 문제는 판결 이후에 좀더 심각해진다. 법적으로 무혐의나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해 지목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며, 사건의 진실 공방은 따질 가치조차 없는 일이 된다.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는 식으로 가해-피해의 구도까지 역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피해자는 공론장에서 그리고 ‘○○\_내’에서 발언권을 잃고 배제되고, 가해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귀환하게 된다.<sup>24)</sup>

‘더러워서 혹은 공론화시킬 자신이 없어서, 가시화된다고 해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은 2차 피해 때문에’ “결국에 가해자는 남는데 피해자는 떠나는”<sup>25)</sup> 이러한 경향은 사건에 대한 진술이 법의 말로만 압축되고, 사건을 둘러싼 ‘정황’이 삭제되는 상황에서 악화된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피해자의 말이 들리지 않게 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24) 동덕여대 H교수는 2015년 12월 문예창작과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피해 학생은 지난 해 3월 H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 외에 교단에서 안희정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한 것이 폭로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최근 미술전시회를 열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해 촬영현장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피디수첩』과 방송에서 증언한 여배우 두 명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어 최근에는 한국어성민우회에 3억 원, 『피디수첩』과 여배우 7씨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덕 감독은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초청받고,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투 시련이 피워낸 예술혼? 하일지 전시회에 동덕여대 학생들 분노』, 『한겨레』, 2019.4.15.; 『김기덕 감독, 역고소·2차 가해 멈추고 사죄하라』, 『한겨레』, 2019.4.18.

25) 『문학3』 제1회 문학토크 #문단\_내\_성폭력, 문학과 여성들 1부, 2017년 2월 17일, 서울 서교동 카페 창비 지하1층, 강소영 발언 녹취록(『문학3』 홈페이지 www.munhak3.com) 참조.

정황은 지워지고 사건은 가해자의 말에 의해 점유된다. 법적인 개념 규정이 판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복합적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사건의 기술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따라서 ‘○○\_내’를 복원하는 작업은 판결문 안에 갇혀 버리는 사건의 다시 쓰기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소송을 치른 피해자와 연대자들의 소송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백으로 남겨짐으로써 오히려 실체는 희미해지는 사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개입과 인식적 전환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sup>26)</sup>

피의자 ○○○이 성적인 글을 주로 쓰던 수강생이었으며 사건 당일 자신이 쓴 글을 봐달라며 카페로 찾아와 피해자의 성적인 글에 대한 고민과 콤플렉스 등에 대한 상담을 했고 …… (피의자의 진술 일부)

피해사실 모두 피의자로부터의 폭행 및 협박은 없었으나 당시 피의자가 출판사나 신문사의 신춘문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언동을 하였고, 대형출판사에 시집을 낼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시인으로 등단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진술 일부)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피해자는 시인으로 등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유명 시인이며 신춘문에 심사위

26) 좌담회 이후 ‘아가미’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았다. 피해자와 연대자가 번거로운 수고를 하면서까지 전해준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법의 말’의 영역에 해석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또 그에 대한 비평적 해석의 지평을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을 거듭했다. 2차 가해의 위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동시에 2차 가해의 우려 때문에 사건에 대해 말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사건이 텅 빈 기호가 되어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료를 흔쾌히 전해준 ‘아가미’ 관계자 분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함께 나눠준 장은정 씨와 권진송 씨에게 감사를 전한다.

원으로도 활동한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해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자신의 등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일부)

이 사건 당시 피의자는 일반인을 상대로 글쓰기 수업을 하는 강사이며 피해자 ○○○은 수업료를 내고 이 수업을 수강하는 수강생으로 피의자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보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업무상 위력 여부 검토 판정 일부)

최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판정된 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이유통지의 일부이다.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고소인과 피의자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문학 강좌의 수강생이었고 업무·고용 등의 사유로 피감독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으로 판정될 때, 문학장의 업무 진행 절차나 고용 방식의 특수성은 ‘업무상 위력’의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일련의 사건들이 불러올 긍정적 효과와 법의 말의 진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사실 법의 말에서 문학에 대한 이해나 문단의 폐쇄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학이나 문단에 대한 이해가 판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의 판결에만 의탁하는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요청된다.

뚜렷한 조직이 없는 문화계의 특성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한 혐의 입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적인 글을 주로 쓰는 창작자를 성적으로 개방적이라고 생각한다면가 하는 식으로 창작자와 창작물의 성격을 곧바로 등치시키는 일도 별다른 검토 없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문학과 문단에 대한 인식을 법의 말에 새기기 위해, 법의 말로 남

작해지는 사건에 맥락을 부여하면서 다시 쓰기 작업이 앞으로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과의 관련 속에서 사건은 다시 말해지고 다시 씌어져야 하는 것이다.

#### 4 '연대자-되기'<sup>27)</sup>와 아카이빙 프로젝트

피해자가 '피해자-되기'의 과정을 거쳐 간신히 마련되는 자리라면, 연대자와 연대자의 자리도 다르지 않다. 나는 어디에 있나,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와 같은 무수한 자성 끝에 연대자의 자리에 나서게 된다.<sup>28)</sup>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쓴 윤이형의 소설 『피클』(『Axt』 14호, 2017. 9/10)은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상시적으로 겪게 되는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을 소설의 주요 테마로 다루면서 이 다시 쓰기와 연대자-되기의 과정을 추적한다.

27) '연대자-되기'는 이 발표문의 토론자인 문학평론가 장은정 씨가 토론문을 통해 제안한 의견이다. 이 글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논의 공간에서 오갔던 의견들을 통해 재구성된 것임을, 이 글의 의미가 거기에 있음을 밝혀둔다.

28) '쓰는 일' 자체가 아니라 '쓰는 일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연대자로서의 나의 위치에 대해 말해야 한다. 피해자와의 거리 혹은 연대 행동 모임 내에서의 위치 혹은 모임과의 거리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연대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을 계기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간접적인 형태로 2016년 '#○○\_내\_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이 시작된 2016년 당시에든 현재에도 나는 피해자를 위한 연대 모임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다. 연대 행동 모임을 경계로 그 내외부에 놓인 많은 '여성 문인'(여기서 '여성 문인'은 "등단 절차를 통과한 여성이 아니라 '글 쓰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모든 여성'을 뜻한다. 『참고문헌 없음』 프로젝트의 취지, 『참고문헌없음』, 2017.) 그 위치성으로 죄의식과 무력감을 포함한 수많은 감정들을 겪었다. 피해자와의 거리가 고통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하고 있었다. 각자의 위치에서의 말들이 잇대어지면서 공감과 성찰, 연대와 확산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단언해서 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연대의 자리란 성공과 실패의 구획 속에 갇히지 않으며 지금껏의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지형으로 만들어지는 형성의 자리라는 사실이다.

유정의 블로그 주소는 그대로였다. 예전에 얼핏 본 사진들은 지워지고 없었다. 대신 짧고 고통스러운 일기가 며칠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읽기가 힘들었다. 창을 닫으려다가 선우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선우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우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몇 번을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다.

늦게 답장을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 마음을 가라앉히려려고 애쓰면서 선우는 계속 읽었다.

그 선우 선배라는 사람은, 자신이 편집기자라서 목소리를 내기가 애매한 위치라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을 미안해했고, 여성 단체에 대신 연락해서 심리 상담을 받게 도와주었으며, 유정이 자해를 했을 때 집까지 달려와 병원에 데려가주고 치료비도 대신 내주었다고 되어 있었다.

그동안 내 생각이 많이 났다고, 더 이상 참아서는 안되겠다고 느끼고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고 선배가 말했다.<sup>29)</sup>

선우는 성폭력 피해나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어서 ‘첫사람’ 활동에 지원한 게 아니었다. 유정에게 답장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었다. 공동체에 일어난 폭력 사건을 해결하라는 촉구를 받은 책임자가 도서관으로 가서 인간 본성에 관한 학술 논문을 찾아 읽고 폭력을 사용하는 외국 철학서를 파고드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행위였다.<sup>30)</sup>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던 여자 후배가 메일로 전해온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백은 급작스럽게 선우를 사건과 무관할 수 없는 자리로 불러들인다. 피해자임을 밝힌 후배 유정이 유부남 상사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정이 선우를 선뜻 연대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조건이었지만, 피해자의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를 돕고자

29) 윤이형, 「피클」, 『악스트』 14호, 은행나무, 2017. 9/10, 143-144쪽.

30) 윤이형, 「피클」, 『악스트』 14호, 은행나무, 2017. 9/10, 143쪽.

하는 윤리적 태도만으로 연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폭력은 그들이 불륜 관계였다는 상황이나 조건과는 무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말의 무게는 같지 않으며 사랑과 폭력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다. 내밀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특성상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남아 있기 쉽지 않으며 강제적인 힘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 성폭력이 법적으로 논의되기 위해 우선 사건이 범죄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판단의 자리에서 피해자가 유혹자라는 편견은 사회의 상식이 되어 쉽게 떨쳐지지 않는다.

가령 '연대자-되기'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선우가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활동 중에 참관한 성폭력 사건 형사재판 과정이 단적으로 말해주듯 “무릎을 만진 것에 대해서까지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피고인이 “그러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를 반복할 때, 대화 중에 격려의 의미로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142쪽)고 주장할 때 피의자에게 그 일은 폭력이 아니다. “술을 많이 마시기는 했지만” “한적한 곳으로 강제로 끌고 간 일은 없었으며”, “술을 깨기 위해 공원 벤치에 잠시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택시 태워 집에 보냈다는 것”, “초범이고, 명문대 대학원생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 자라” “이성관이 보수적이며”, “따라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심한 행위를 했을 리가 없고”, “증인이나 물적 증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남의 학교 일일 호프에 와서 낯선 남자와 술을 마셨던 점”(142쪽)을 고려해달라는 변론은 지나치게 전형적이고 그래서 또 뻔할 만큼 익숙한 논리이다.

‘연대자’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연대자-되기’란 무엇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연대라 할 수 있는가.<sup>31)</sup> ‘피해자-되기’가 거듭된 자책과 반성

31) 결론을 당겨 말하자면, 각자의 방식으로 지속하는 연대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장의 고민을 학술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지금껏의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미투 운동의 행보를 아카이빙을 하거나 그러한 작업을

과 성찰을 통해 겨우 가능한 일이라면, ‘연대자-되기’ 또한 오랜 시간을 거쳐서나 가능한 일이다. “왜 나왔을까.”(137쪽) 유정의 고백을 전해들은 선우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소설의 이 대목을 두고 왜 ‘왜 나왔을까’를 질문했는가를 곱씹게 된다. 그 ‘나의 자리는 친분이 깊지는 않았으나 신뢰할 만한 선배에서 점차 유정의 나이였던 12년 전의 선우 자신의 경험으로 선우를 이끈다. 12년 전 회사에서 성희롱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절, 편집장이던 여자 선배조차 음담패설로 신입들을 놀리던 시절, 인턴이던 선우가 젠틀하다고 여겼던 선배(-현재 편집장)에게 차에서 당한 성추행의 기억을 불러온다. 이렇게 본다면 “왜 나왔을까”라는 질문은 사실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던, 소리를 내지르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은 기분에 눌렸던 자신이 당한 성추행의 기억을 부르는 호명이자 그 기억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이 그냥 밀려나오게 하는 ‘연대자-되기’의 힘이 아니었을까.

21세기형 사회소설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박민정의 소설 『모르그 디오라마』(『릿터』 10호, 2018. 2/3)에서 불쑥 동료의 입을 통해 발언한 말, “누구 하나 성범죄 피해자 아닌 사람 있을까”<sup>32)</sup>가 어린 시절 겪었던 성범죄에 대한 일종의 미투 선언이라면, 연대자 되기의 과정에서 기억의 장막을 찢고 솟아오르는 성추행 피해는 “왜 나왔을까”(『피클』, 137쪽)에 대한 응답이자 미투-위드유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수화기 저편에 유정이 **함께** 있었다. 이제 선우가 **기다릴** 차례였다.”(『피클』, 153쪽, 강조: 인용자) 함께, 그리고 서로를 기다리면서, 이후를 상상하는 소설 『피클』의 끝 역시 의미심장하다. 권김현영은 미투 운동과 이전의 반성폭력 운동의 질적 차이를 말한다. 권김현영에 의하면, 미투는 “상호 증언 특유의 형식 속에서, 사법제도 바깥에서, 사회가 무너진 곳에서 만들어진 직접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혁명의 언어”였고, “당사자들에 의해 당사자성을 넘어간 연대의 언어”였다. 미투 운동의 본질은 그동안 말할 수 없

지원하는 역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연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32) 박민정, 『모르그 디오라마』, 『릿터』 10호, 민음사, 2018. 2/3, 119쪽.



도록 만든 사회에 대고 “이제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행위에 있다.<sup>33)</sup> 분명한 것은 이 행위의 힘이 결코 미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다시 말하기’와 ‘다시 쓰기’가 피해자의 맥락 복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언제나 끝내 불충한 채로 그럼에도 사건의 기록인 다시 쓰기는 매번 반복되면서 계속되어야 한다. “사건의 기억은 풍문이나 비공식 문서로 전해지다 유실되기 일쑤고, 과정의 맥락도 시차가 벌어질수록 분석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sup>34)</sup> 고발과 폭로가 시작되는 순간, 피해자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일상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며, 피해자의 기록 또한 위태로워지고 삭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피해자의 자리가 소실되는 동안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자에 관한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함께 움직인 연대 활동 기록도 편집되거나 소실되어 버린다.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고발과 폭로를 지지한 이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를 지속하려던 이들이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겪었는가에 대한 기록 또한 당시의 해시태그를 통해 이루어졌던 아카이빙의 충실한 복원과 함께 거기에 덧붙여 지금 이곳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의 약사<sup>35)</sup>를 타임라인에 따라

33) 권김현영, 『미투,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환』, 『문학동네』 2018년 여름호, 330-334쪽.

34) 유현미, 『성차별적 위계구조의 담장 넘기: 교수 갑질 성희롱 사건 대응활동과 대학 미투운동의 현재』, 『경제와사회』 제120호, 비판사회학회, 2018, 91쪽.

35) “2016년 #○○\_내\_성폭력’ 고발이 시작된 이후로 문학, 출판, 문화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16년 가을 #○○\_내\_성폭력’ 고발이 시작되었고, 문학출판계 성폭력 사태가 공론화된 이후 여성문인과 문단, 출판사와 독자가 함께 움직이는 적극적 대처가 시작되었다. 관련 출판사에서는 사고(社告)로 사과문을 고지하고(2016년 10월 21일자), 가해자로 지목된 시인의 책을 출고 정지 조치한다. 송승언 시인이 일련의 성추문과 문학과지성사의 출판문화 권력의 상관성을 지적하면서 문학과지성사가 사고로 발표한 “사회적 정의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입장과 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바 있다.(온라인 메모장 에버노트에 공개한 『문학과지성사에 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016년 10월 31일 ‘문단 내 성폭력’에 반대하는 작가행동 ‘페미라이터’가 발족했고, 2016년 11월 11일 고양예고 문예창작과 졸업생 연대 ‘탈선’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문단 내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루어졌다. 2017년 1월 17일 문화예술계 성폭력 해결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문화예술계\_내\_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개최되었고, 2017년 2월 17일 『문학3』 주최로 문학몹 #문단\_내\_성폭력, 문학과 여성들 토론회가 열렸다. 2017년 3월 피해자를 지지하는 기금 마련 프로젝트 <참고문헌없음> 텀블벅 모금이 기획되었고, 2017년 4월 페미라이터가 해체되었다.

이 약사가 여전히 운동의 기록으로서 불충분하며 사후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지점들을 담고 있다면, 여기에 더해 이 운동 이후의 활동을 기록하는 일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가령, ‘페미라이터’와 ‘참고문

---

합니다.], 2016.11.3; 황수현, 『시인 성추문 문학과지성사에도 책임 있다.』 『한국일보』 2016.11.4.) 이에 문학과지성사는 “향후 출판 계약 체결 중단, 계간지 『문학과사회』 원고 청탁 중단에서 기 출간 도서 절판까지 포함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기 출판 시집의 출고 정지 조치를 취했음을 밝힌바 있다(문학과지성사 홈페이지, 2016.11.6.). 이러한 출판사의 대응은 “꼬리만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근본적으로 문단과 출판사 문화를 돌아볼 수 있는 자생적인 노력과 의지 표명이 요청된다’는 비판을 불렀다.(『#문화계\_내\_성폭력』, 『경향신문』, 2016.11.15. 성폭력 가해자 논란에 휩싸인 문인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이 사태를 문학·문화계의 구조적 문제로서 다룰 여지를 좁히거나 개인의 윤리적 결함이나 일탈의 문제로 호도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11월에 문단 내 성폭력에 반대하는 작가행동이자 연대의 이름인 ‘페미라이터(Femiwriters)’가 발족했으며, ‘문학출판계 성폭력·위계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작가서약’ 운동이 시작되었다. 문학출판계 성폭력 위계폭력 피해의 증언을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문학잡지에서는 문학출판계의 성폭력 폭로 사태를 주요 이슈로 다루었다. 『문학과사회』 116호(2016년 겨울호)는 #문단\_내\_성폭력 기획을 통해 문단 내 성폭력 피해자들과 그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문인들의 글에 지면을 제공했고, 『문학동네』와 『21세기 문학』 2016년 겨울호는 좌담을 통해, 『문예중앙』에서는 연속기획을 통해 문학과 페미니즘에 관한 이슈를 확장해나갔다. 2017년 문단 내 성폭력 피해고발자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기금 마련 프로젝트가 기획되었으며(‘참고문헌없음’), 4월 페미라이터가 해체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7년 봄에 『참고문헌없음』이 출간되었다. 돌이켜보면 채 일 년이 안 되는 시간동안 벌어진 일이다.”(강조: 인용자)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동네』, 2017년 겨울호, 525쪽.

헌없음'의 경우처럼 연대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갈등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가.<sup>36)</sup> 『참고문헌없음』은 3인이 공동 집필한 서문이 들어가기도 했으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2명의 필자가 빠지게 되었다. 『참고문헌없음』은 서문을 대신한 서문의 자리를 흔적으로 남겨두었다. 따지자면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니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자리에서 유의미한 경험으로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카이빙 작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갈등은 누구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라는 어려운 질문으로 되돌려질 수밖에 없다.

법정 공방이나 연대 모임을 두고 성공과 실패를 일면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성패의 문제로 평가됨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성패를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법정 공방이나 연대의 '실패'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도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아카이빙을 둘러싼 고충은 단지 연대의 성패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차원의 것만이 아니다. 문제는 소송의 결과나 연대 자체의 어려움이 야기한 문제들로 인해 이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나 미투 운동에 의해 거론된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증폭된다. 실제로 연대의 과정에서 얻은 상처에 대한 대면 없이 누구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의 기억들을 말하기 불편해지자 갈래화된 연대의 행보들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 현장의 기억들도 결국 말할 수 없어서 말해질 수 없는 게 되고 있다. 혹은 사후적으로 선별된 기억들만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의 기록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연대활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이다.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아카이빙 작업의 중요성이 반

36) <참고문헌없음> 준비팀의 『문단 내 성폭력, 연대를 다시 생각한다』(권김현영 엮음,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와 임술아의 소설 『눈과 사람과 눈사람』(『눈과 사람과 눈사람』, 문학동네, 2019.)은 이 연대 내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복적으로 강조되어왔다.<sup>37)</sup> 2017년 ‘페미라이터’ 쪽에서 이루어졌던 아카이빙 작업이나 『참고문헌없음』, 세도우핀즈, 마녀 계정(트위터)을 통해 SNS 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카이빙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대 활동의 과정 중에 겪은 갈등의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약사에 언급된 글 가운데에는 블로그나 트위터에서 일부 확인 가능하지만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접근할 수 없는 글, 언론 보도, 기록들이 적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사건들은 법적인 무혐의나 무고로 판결되어, 관련 기록이 정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했다. 기록의 삭제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다시 강조컨대, 아카이빙 작업이 절실하다.<sup>38)</sup> 아카이빙 작업을 지속하는 동시에, 향후 각자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아카이빙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차별적 위계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고자 하는 비판적 인식과 태도로 ‘○○\_내’와 ○○의 근본적 변화를 마련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민정, 『모르그 디오라마』, 『릿터』 10호, 민음사, 2018. 2/3, 106-122쪽.  
 송승언, 『송사 이후』, <<형평문학포럼: 문학 젠더를 말하다>>, 2018.4.27.  
 윤이형, 『피클』, 『악스트』 14호, 은행나무, 2017. 9/10, 133-153쪽.

37) 『문학3』 제1회 문학톱 #문단\_내\_성폭력, 문학과 여성들 2부, 2017년 2월 17일, 서울 서교동 카페 창비 지하1층, 발언 녹취록(『문학3』 홈페이지 [www.munhak3.com](http://www.munhak3.com)) 참조.

38) 이런 의미에서 최근 다시 시작된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장은정 평론가가 만든 페미니즘 문학비평 위키(<http://ko.femilit.wikidok.net/Wiki>)는 현재 시인, 독자, 그리고 페미위키 운영자 2인과 접속하여 2016년 ‘#○○\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그로부터 발원한 페미니즘 문학비평의 담론적 추이를 아카이빙 하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문단\_내\_성폭력 시즌2,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 비등단 선언 등 새로운 움직임』, 『경향신문』, 2019.5.13.

- 『‘꿈’ 볼모로 미성년 성폭행…배용제 시인 판결이 남긴 것』, 『한겨레』, 2017.9.20.
- 『고은 시인, ‘성추행 폭로’ 최영미 시인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최영미 진술 구체적·일관돼”』, 『서울신문』, 2019.2.15.
- 『김기덕 감독, 2차 가해 멈추고 역고소 취하하라』, 『뉴시스』, 2019.4.18.
- 『김기덕 감독, 역고소·2차 가해 멈추고 사죄하라』, 『한겨레』, 2019.4.18.
- 『미투 시련이 피워낸 예술혼? 하일지 전시회에 동덕여대 학생들 분노』, 『한겨레』, 2019.4.15.
-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와 증거판단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률신문』, 2018.4.20.
- 『최영미 시인 “정의 살아있어…가해자가 피해자를 뺄뻔스레 고소”』, 『국민일보』, 2019.2.15.
- 『최영미 시인 “정의 살아있음에 감사”』, 『한겨레』, 2019.2.15.
- 『“최영미 시인, 고은에 배상 책임 없다”』, 『MBC: 이슈완정정복』, 2019.2.15.
- 『#문단\_내\_성폭력 시즌2, 피해자 연대모임 ‘아가미’, 비등단 선언 등 새로운 움직임』, 『경향신문』, 2019.5.13.

## 2. 단행본

- 권김현영 외,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 권명아, 『여자때 공포, 젠더 어펙트』, 갈무리, 2019.
- 임솔아, 『눈과 사람과 눈사람』, 문학동네, 2019.
- 정희진 외,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 참고문헌없음 준비팀 엮음, 『참고문헌없음』, 2017.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 정희진 엮음, 『성폭력을 다시 쓴다』, 한울, 2003.
- 林奕華, 허유영 역, 『팡쓰치의 첫사랑의 낙원』, 비채, 2018.

## 3. 논문

- <참고문헌없음> 준비팀, 『문단 내 성폭력, 연대를 다시 생각한다』, 『피해와

- 가해의 페미니즘』, 교양인, 2018.
- 권김현영, 『미투, 반성폭력 운동의 윤리-정치적 전환』, 『문학동네』, 2018년 여름호, 329-347쪽.
- \_\_\_\_\_, 『피해자 중심주의는 여성주의적 원칙인가』, 『문학동네』, 2018년 가을호, 581-600쪽.
- 권명아, 『노예화와 예속 상태로서 권력형 성폭력과 페미니즘의 신체 유물론』, 『문화과학』 제95호, 2918, 18-49쪽.
- 권인숙·이화연,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85-118쪽.
- 김보화, 『강간공화국을 뒷받침해 온 법, ‘무고죄’』, 『일다』, www.ildaro.com, 2018.4.16.
- \_\_\_\_\_,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성폭력 말하기 운동』, 『시민과 세계』 제32호,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183-197쪽.
- 김은경·이나영, 『성폭력, 누구에 대한 어떤 공포인가: 언론의 성폭력 재현과 젠더질서의 재생산』,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0권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5, 5-38쪽.
- 김효인, 『SNS 해시태그를 통해 본 여성들의 저항 실천: ‘#OO\_내\_성폭력’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2권4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5-70쪽.
- 배상미, 『성폭력 피해자의 섹슈얼리티』, 『여/성이론』 제36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7, 12-37쪽.
- 소영현, 『페미니즘이라는 문학』, 『문학동네』 제92호, 문학동네, 2017년 겨울호, 519-539쪽.
- 양경언, 『우리는 함께 시작했다- 고양예고 졸업생 연대 ‘탈선’의 성명발표에 부쳐』,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6.11.17.
- 우지안, 『미투, 살아남는 자리에서 말하기: ‘편 배제’와 연대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제95호, 2018, 74-99쪽.

- 유현미, 「성차별적 위계구조의 담장 넘기: 교수 갑질성희롱 사건 대응활동과 대학 미투운동의 현재」, 『경제와사회』 제120호, 비판사회학회, 2018, 90-131쪽.
- 이선미,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42권5호, 한국사회학회, 2008, 101-139쪽.
- 이희은, 「페미니즘 운동과 미디어 윤리: #미투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제55권 3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8, 120-157쪽.
- 홍지아, 「신문기사 프레임 분석을 통해 본 성폭력의 의미구성」, 『한국방송학보』 제23권 5호, 한국방송학회, 2009, 458-498쪽.

## Abstract

### Post-MeToo Movement and ‘Citizen-Reader’ Position

: after life, beyond literature

So, Young-hyun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changes since the MeToo movement, which began in 2018, and forecast the era of the post MeToo movement. While there are many achievements of the MeToo movement, it should be said that such achievements are one-sided, considering the literature field. In fact, it is necessary to go back to the sexual violence hashtag movement in 2016. In this paper, the MeToo movement pointed out that different re-writing methods have begun to be requested according to the communities and discussed the corresponding re-writing methods. In addition, I pointed out that the missing and distorted records of the sexual violence hashtag movement and thus pointed out the urgent need for re-writing the cases of sexual violence hashtag movement and archiving the cases.

Key words : #Sexual violence hashtag movement, #MeToo movement, sexual violence, becoming victim, archiving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